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제2호 및 제8조제1항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.

제9조제2호 및 제9조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.

제35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“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「주택법」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이 되는 노인복지주택(공장부지(이적지 포함)에는 노인복지주택을 건축할 수 없다. 다만, 도시환경정비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별표 2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산업부지를 확보하고 산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.)”로 한다.

제42조를 삭제한다.

제43조 중 “시가지경관지구 및 이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주변경관지구안에서의”를 “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”로 한다.

제53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(다음 페이지에 계속)

## 신 · 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
<p>제8조(경관지구의 세분) ①영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경관지구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시계(시계)경관지구 :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외곽지역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</p> <p><u>2. 문화재주변경관지구 :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·유지하기 위하여 문화재 주변의 경관 유지가 필요한 지구</u></p> <p><u>3. 조망경관지구 : 자연경관의 조망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각적 경관의 보호·관리가 필요한 지구</u></p>	<p>제8조(경관지구의 세분) ①영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경관지구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<u>2. &lt;삭 제&gt;</u></p> <p><u>3. &lt;삭 제&gt;</u></p>
<p>제9조(용도지구의 지정) 법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.</p> <p>1. 문화지구 : (생략)</p> <p><u>2. 보행우선지구 :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거나 시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구</u></p> <p><u>3. 사적(史的)건축물보전지구 : 고유의 전통 건축물 및 근대건축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</u></p>	<p>제9조(용도지구의 지정) 법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.</p> <p>1. 문화지구 : (생략)</p> <p><u>2. &lt;삭 제&gt;</u></p> <p><u>3. &lt;삭 제&gt;</u></p>

현 행	개 정
<p>제35조 (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)                      7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「주택법」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이 되는 <u>노인복지주택. 다만, 도시환경정비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별표 2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산업부지를 확보하고 산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.</u></p> <p><u>제42조(조망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) ① ~ ⑤ (생략)</u></p> <p>제43조 (기타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) 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<u>시가지경관지구 및 이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주변경관지구안에서의</u> 건축물의 용도제한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최대너비·색채 및 대지안의 조경 등의 건축제한은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</p> <p>제53조 (기타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)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1~4.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5. <u>보행우선지구</u>                      6. <u>사적(史的)건축물보전지구</u>                      7~8. (생략)</p>	<p>제35조 (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)                      7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「주택법」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이 되는 <u>노인복지주택(공장부지(이적지 포함)에는 노인복지주택을 건축할 수 없다. 다만, 도시환경정비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별표 2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산업부지를 확보하고 산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.)</u></p> <p><u>&lt;삭 제&gt;</u></p> <p>제43조 (기타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) 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<u>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</u> 건축물의 용도제한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최대너비·색채 및 대지안의 조경 등의 건축제한은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</p> <p>제53조 (기타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)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1~4.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5. <u>&lt;삭 제&gt;</u>                      6. <u>&lt;삭 제&gt;</u>                      7~8. (생략)</p>